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유재산 임대시 임대료 경감 범위 확대〉

■ 박 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09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 정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13.
3. 회부연월일 : 2026. 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특성이 있어,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하더라도 임대료 부담이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민간투자 유인과 보급 속도를 제약할 수 있음.

이에 국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지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위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경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 ----- -----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¹⁾

그런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사업기간이 장기(20년 이상)인 특성상 공공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가 민간의 투자유인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비율을 현행 50%의 범위에서 80% 범위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²⁾은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제고하기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위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종전의 50%에서 8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음.

다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³⁾는 국유재산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대료 경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⁴⁾

이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010호)이 발의되어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심사와정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⁵⁾⁶⁾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4) 참고로,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만이 국유재산특례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료등의 감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010호)

[별표]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1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	----------------------------------	---------------------	---------------

6)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에 따른 임대료 경감범위 확대(50%→80%)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한편, 현행법에서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제21462호)⁷⁾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신에너지(수소 및 연료전지 등)”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면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3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제명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됨.